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568 관 련
----------	-------------

제안연월일 : 2020년 6월 30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기업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단 본연의 고유업무 수행에 차질 발생 우려에 따라 이를 정비함.

2. 주요내용

- 기업 지원 대상의 범위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명확히 함.
(안 제4조제2호)
- 재단의 과도한 위탁사업 수행은 본연의 고유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수행 내용은 삭제함.(안 제4조제8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호 중 “기업 지원”을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과 벤처기업 지원”으로 하며,
안 제4조제8호 중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및”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5. 생략</p> <p>6. IT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을 말한다] 지원, 디지털 교육·포럼 및 커뮤니티 활성화</p> <p>7. 생략</p> <p>8. 그 밖의 디지털 서울 구현 및 디지털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생략</p> <p>2.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u>기업 지원</u></p> <p>3.· 7. 생략</p> <p>8. <u>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u> 및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p>	<p>제4조(재단의 사업)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생략</p> <p>2.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u>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과 벤처기업 지원</u></p> <p>3.· 7. 생략</p> <p>8.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p>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및 컨설팅
2.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과 벤처기업 지원
3.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
4.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5. 빅데이터 관련 교육, 컨설팅, 공공·민간데이터 활용 사업
6.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7.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디지털 기술
관련 사업
8.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첨단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서울 구현과, 디지털 산업 지원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 디지털경제 육성을 위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 세트를 말한다]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연구 및 컨설팅 2. 디지털산업 지원을 위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서비스 3.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운영 	<p>제4조(재단의 사업)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및 컨설팅 2.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과 벤처기업 지원 3.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

현 행	개 정 안
4.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디지털 관련 사업	4.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5. 각 기관의 디지털관련 업무 중 재단이 추구하는 사업과 중복될 경우 협의·조정 후 재단으로 이관이 가능한 디지털 사업	5. 빅데이터 관련 교육, 컨설팅, 공공·민간데이터 활용 사업
6. IT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을 말한다] 지원, 디지털 교육·포럼 및 커뮤니티 활성화	6.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7. 글로벌 디지털컨퍼런스 및 페스티벌 등 디지털 네트워킹 활동	7.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디지털 기술 관련 사업
8. 그 밖의 디지털 서울 구현 및 디지털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